

의안번호	제 21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박우양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6월 24일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우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6월 24일

발 의 자 : 박우양·임영은·박문화·이상식

이상정·하유정·이의영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-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직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소상공인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(안 제2조)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(안 제3조)
-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8조, 안 제13조, 안 제1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완료

7. 입법예고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.

제2조제9호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9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2019년”을 “2024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장

제18조제1항 중 “중소기업진흥공단”을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.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9.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(이하 “기업진흥원”라 한다)”이란 「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62조의22와 <u>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9</u> 및 「<u>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</u>」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.</p> <p>10. ~ 17. 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9년</u>까지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<u>말한다.</u>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0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2024년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 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) ① 도 지사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또는 용자 금을 <u>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</u> 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용자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 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) ① -- ----- ----- ----- --<u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유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하되, 도지사가 임명 또 는 위촉한 자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 본부장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	<p>제13조(유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 지역본부장</u>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전문기관의 협조)① 도지사는 <u>중소기업진흥공단</u>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·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전문기관의 협조) ① --- <u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“재산“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3조(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)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3. 16, 2010.1.1, 2015. 7. 31>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 [신설 2010. 1. 1]

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7.>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2.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

3. 「지방세징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

②~④ (생략)

제68조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)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

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~⑧(생략)

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 소상공인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“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